	보도자료		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
보도일시	2021. 12. 7.(화) 조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 온라인 : 2021. 12. 6.(월) 정오 12:00 이후		총 3쪽 (붙임 1쪽 포함)
배포일시	2021. 12. 6.(월)	담당부서	청소년가족정책실 가족문화과
담당과장	양철수(02-2100-6361)	담 당 자	김영숙 사무관(02-2100-6363) 박은수 주무관(02-2100-6368)

가족친화인증제 인증기준 개선 추진 후 내년부터 적용

- 제32차 가족친화인증위원회 -

- 2021년 가족친화인증기업·기관 전년대비 578개 증가한 4,918개 확정
- 기업 현장에 적합한 법규 세부기준 재정비 및 6개 인증취소 심의·의결

□ 여성가족부(장관 정영애)는 지난 11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2차 가족친화인증위원회(위원장, 여성가족부 차관)를 열고, **2021년 가족친화인증기업·기관 4,918개***를 확정했다.

* 전년 4,340개 대비 578개(13.3%)가 증가한 총 4,918개
(대기업 520개(10.6%), 중소기업 3,317개(67.4%), 공공기관 1,081개(22.0%))

○ 이날 회의에서는 가족친화인증제의 품질 제고를 위해 **중소기업에 맞도록 인증기준을 개선**하는 방향도 함께 논의되었다.

□ 여성가족부는 그동안 인증기업의 양적인 확대를 위한 노력과 함께 **인증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인증 후 관리를 강화**하여 가족친화인증제 품질을 제고해 왔다.

○ 올 상반기에는 기업이나 그 대표의 가족친화경영 이행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▲최고경영층의 지도력(리더십) 평가항목에서 '사회적 물의 야기 여부'를 확인하도록 인증기준을 개정했고 이를 인증 부여 또는 취소* 여부 심의 시 반영하였다.

* ▲인증취소 6개(여성가족부 누리집에 공개) ▲개선권고 9개 ▲종결 3개

○ 2022년에는 인증 심사기준 중 가장 많은 배점을 차지하고 있는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'가족친화제도의 실행' 분야를 중소기업의 상황에 맞도록 개선하여 인증제의 실효성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.

> * 심사기준(100점 만점): ▲최고경영층의 리더십(20점 정성평가, 현장인터뷰), ▲가족친화제도의 실행(60점 정량평가), ▲가족친화경영 만족도(20점 정성평가, 온라인 설문조사)

○ 현재는 **직원 수가 적어** 육아휴직, 출산전후휴가와 같은 **가족친화제도의 이용자가 없을 경우** 평가에 정확히 반영되지 않는 측면*이 있었으나,

* 특정 항목에 대한 평가대상자가 없을 경우 '해당 없음' 처리한 후 이용자가 있는 항목만 평가해 이를 '해당 없음' 항목에 부여된 배점에 따라 환산·부여

- 앞으로는 **'연차활용률', '가족친화 프로그램 실행'과 같은 지표로 대체**해 해당 **기업·기관의 가족친화 수준을 실제에 가깝게 평가**할 계획이다.

□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는 근로기준법 중 가족친화와 관련된 법규 세부기준 정비 사항을 심의·의결하였다.

○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내년 가족친화기업 인증공고 시('22.4월) **신청 기업들이 준수해야 할 세부 법규기준과 인증취소 기준**을 명확히 안내하고, **기준 준수 여부를 꾸준히 점검**해나갈 계획이다.

○ 또한, 기업이 인증 후에도 지속적으로 가족친화수준을 제고하고 인증의 적합성 여부를 자체적으로 진단할 수 있도록 **가족친화 교육·자문 활동(컨설팅), 온라인 자체점검 시스템 지원을 강화**해 나갈 예정이다.

□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"이번 **인증기준 개선을 계기**로 보다 **내실 있는 가족친화기업 인증 심사**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."라며, "**일·생활 균형을 지원하고,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 조성**을 위한 **노력을 지속**해 나가겠다."라고 밝혔다.

【붙임】 가족친화인증제 운영 개요

여성가족부 보도자료 저작물은 "공공누리 제1유형(출처표시)"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붙임 가족친화인증제 운영 개요

□ (개요) 가족친화제도(자녀출산 및 양육지원, 유연근무 활용 등)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심사 후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

□ (추진 경과)

- '07.12월 : 「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정
- '08. 6월 : 가족친화인증제 시행 및 가족친화인증기관 지정·운영
- '11. 2월~ : 가족친화지원센터 지정·운영
- '17. 3월~ : 공공기관 대상 가족친화인증 의무화

□ (추진 체계) 인증심사(한국경영인증원 수행), 교육·자문(한국건강가정진흥원 수행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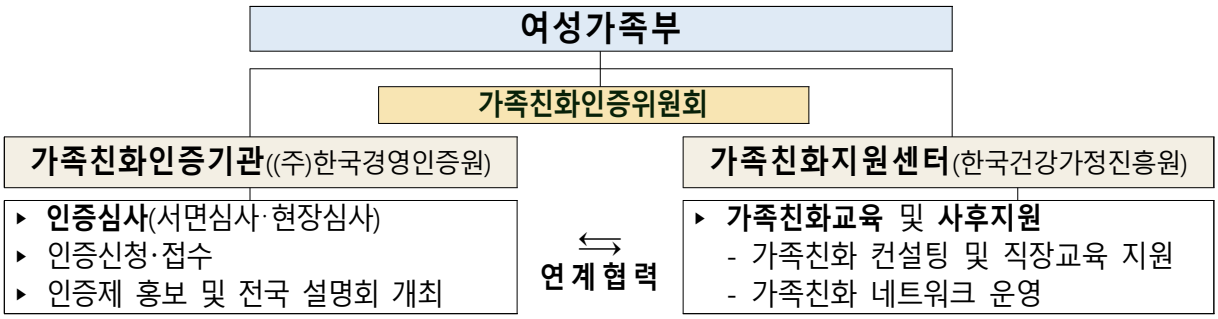

□ (인증 현황)

(단위 : 개사)

연도	'08	'09	'10	'11	'12	'13	'14	'15	'16	'17	'18	'19	'20	**'21**
계	14	34	65	157	253	522	956	1,363	1,828	2,802	3,328	3,833	4,340	**4,918***

* 대기업 520(10.6%), 중소기업 3,317(67.4%), 공공기관 1,081(22.0%)

□ (혜택) 정부·지자체 사업자 선정 시 가점, 중소·중견기업 투·융자 금리 우대, 출입국 심사 시 우대 등 229개 혜택* 지원('21년 기준)

* ('08) 9개 → ('14) 96개 → ('18) 186개 → ('19) 211개 → ('20) 220개 → ('21) 229개

□ (인증절차) 사업공고(4월) → 설명회·신청접수(4~6월) → 서류·현장 심사(4~10월) → 인증위원회 심의(11월) → 인증 부여(12월)

□ (인증기간) 신규인증(3년) → 유효기간 연장(2년) → 재인증(매 3년)

○ 인증마크 사용권한 부여 : 가족친화인증기업 이미지 제고

* 인증유효기간 동안 제품이나 포장·용기, 홍보물 등에 표시